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투명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s and Transparency in Public Organizations

이 현 영 (Hyun Young Lee)\*

정 연 경 (Yeon Kyoung Chung)\*\*

### 목 차

- |                |                          |
|----------------|--------------------------|
| 1. 서 론         | 3. 정보공개 운영 현황과 공공기관의 투명성 |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1 정보공개 운영 현황 및 추이      |
| 1.2 연구 방법 및 내용 | 3.2 공공기관의 청렴도            |
| 1.3 선행 연구      | 4. 정보공개와 투명성의 관계         |
| 2.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 | 4.1 통계분석                 |
| 2.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4.2 상관분석                 |
| 2.2 투명성에 관한 정의 | 5. 결 론                   |

### <초 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수반되어야 하는 투명성이 정보공개제도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시기별·기관 유형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해 보았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투명성의 정의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2003년~2013년까지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정보공개와 투명성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하였다.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업무 과정을 제대로 기록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투명성 진단 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정보공개, 투명성, 공공기관, 청렴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in public organizations, a significant relationship can be found between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s. The study also aims to analyze how the relationship has changed and whether political regimes and organization type matter for such changes. The meaning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concept of transparency were reviewed through existing literature, the status of which was analyzed using related statistical data. Using a decade of disclosure rate and integrity index data from 2003 to 2013, the correlation between those two variables by political regimes and organization type was analyzed. To improv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ransparency in public organizations, ensuring the documentation of work process, providing the consumer with the information that he/she wants, and institutionalizing systems to evaluate transparency are import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ransparency.

Keywords: information disclosure, transparency, public organizations, integrity index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 선임행정원(hylee@kipf.re.kr)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ykchung@ewha.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7년 7월 25일 ■ 최종심사일: 2017년 8월 2일 ■ 게재확정일: 2017년 8월 18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3), 97-114, 2017. <<http://dx.doi.org/10.14404/JKSARM.2017.17.3.097>>

## 1. 서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정보공표,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를 통한 정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정보공개제도, 원문정보공개, 정책실명제의 내실화로 실행된다(행정자치부, 2014). 이러한 투명성은 정보접근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정보공개법을 제정하는 이유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투명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1990년 이후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1993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설립, 1997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투명성규약 및 2003년 UN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이 체결되는 등 국제사회는 투명성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공개,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윤리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1990년대 이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민주화와 더불어 각종 법령을 제·개정하였다. 특히 투명성 개념은 행정규제기본법(제5조), 정보공개법(제1조), 공공기록물법(제1조), 행정절차법(제1조), 특정금융정보법(제1조), 부패방지권익위법(제4조) 등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투명성이 행정절차, 부패방지, 자금세탁 방지, 규제개혁, 정보공개, 민주주의 절차 보장, 공직부패방지 등 행정개혁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송희

준, 2002).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라는 이슈가 등장한 것은 민주화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운동에 의해 개정된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1989년 9월 4일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지방의회가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고, 1992년 충청북도 청주시가 최초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확산되었다.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법 제정요구,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 중앙정부 관료들의 반발 등 많은 논란 끝에 1996년 12월 31일 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열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하승수, 2011).

정보공개제도는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특히 2004년에는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 행정정보 사전공표 및 정보목록 작성·비치의 의무화,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추상적인 비공개 기준 삭제,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민간위원을 과반수 포함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을 전면 개정하였다. 또한 2006년 4월부터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구축하여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개정에서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하도록 하였고 2011년 개정에서는 사전공개 대상정보의 구체화 및 정보공개책임관을 도입하였다.

2013년 개정에서는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내부검토과정 종료 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국 정부는 얼마나 투명해졌는지, 그 추이를 정보공개율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가 무엇을 해왔는지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명성에 관한 하나의 정의라고 본다면, 정보공개율과 투명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지수를 살펴보고, 정보공개율과 투명성 지수의 상관성을 파악해서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 1.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의 관계를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보공개제도의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법 개정 등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살펴보고 정보공개제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으며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한 요소와 지표를 도출해 내었다.

둘째, 『정보공개연차보고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기관별 처리현황을 바탕으로 1998년~2013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의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추이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셋째, 정보공개 및 투명성과 관련된 지수를 바탕으로 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하였다. 분석 대상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주요 공기업으로 나누어 기관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분석기간은 2003년~2012년으로 10년간의 추이를 정권별로 살펴보고, 공기업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 2008년부터 따로 분리하여 통계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2008년~2012년 5년간의 추이를 다루었다.

## 1.3 선행 연구

국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법학, 행정학 또는 언론학 영역에서 주로 진행되었으며, 점차 기록학의 포괄적인 관점과 더불어 해외공개제도 분석을 통해 정보공개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였고, 운영상의 문제점,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정보서비스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관점에서의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적과 성과,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정보공개제도를 제도적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으로 김미경(2008)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굿거버넌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도모를 위해 정부는 정보공개를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굿거버넌스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승수(2009)는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제도의 역사적, 제도적 연관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근 두 제도가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운동 차원에서 정보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과 기록물관리를 모니터링하는 운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조영삼(2009)은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유승(2010)은 공공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에 있어 전향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버먼트 2.0과 정보공개제도의 변화와 전망을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보공개제도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법제도의 정비, 기술적인 보안과 기반의 문제, 이용자 중심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하였다. 윤은하(2012)는 정보공개청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기록정보 서비스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이보람과 이영화(2013)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의 훼손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제도적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혜라와 장우권(2016)은 지자체 자체 법규에서 정보공개 제도와 기록물 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337개의 자치

법규를 분석하여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적 및 성과와 관련하여 김승태(2009)는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기여해 왔으며, 지난 10년간의 제도 시행을 바탕으로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비공개대상정보 및 소극적 정보공개 행태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후, 김승태(2010)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에 관한 연구로 이근주(2003)는 국민과 정부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비효율과 부정부패의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서울시 OPEN system 사례 고찰과 행정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설문분석을 통하여 정보공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지원과 문신용(2004)은 2002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의 33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행정정보공개와 관련 있는 변수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기관별 청렴도와 정보공개청구건수가 행정정보공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

만족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정보공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충민원접수건수는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철(2009)은 2002년~2007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나타난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현황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부기능 및 행정부처별 특성에 따른 정보공개행태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행태는 권력부서이면서 기획업무수행 기관일수록 회피지향적 성향으로 인해 소극적 정보공개행태를 보이며, 비권력부서이면서 집행업무수행 기관일수록 공개지향적 성향으로 인해 적극적 정보공개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진과 문명재(2010)는 1998년~2007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수록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관의 정보공개행태가 기관이 사용하는 수단이나 업무성격, 기능에 의하여 체계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의 기능적 특성이 조절변수로 작용하여 조직적 특성이 정보공개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orthy(2010)는 2000년부터 시행된 영국의 정보공개법(FOI, Freedom of Information)이 중앙정부에 끼친 영향을 투명성과 정보공개 증가, 책임설명성 증가, 정부의사결정의 질 개선,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이해도 개선, 국민 참여 증가, 국민신뢰 증가라는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핵심 목표인 투명성과 책임설명성에 대해서는 충족하고 있지만 4개의 포괄적이고 변형된 이차적 목표의 흐름은 아직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재완과 정광호(2011)는

2007년~2009년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배구조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반대당 의석비율과 진보정당 의석비율이 정보공개 수용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거경쟁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alland & Bently(2013)는 정보공개법의 영향과 효과분석이 체계적 증거의 부족과 정보공개제도에서 나타나는 권리에 대한 개념의 혼란 등으로 어렵다고 하였다. 정보공개제도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보의 수요와 공급을 촉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부재하고, 체계적인 증거도 부족하며, 학계에서도 정보공개법의 급속한 발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보공개에 대한 선행연구는 규범적, 제도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았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보공개 형태에 관한 실증연구, 지방정부의 정보공개 형태나 수용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및 운영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하는 연구, 정보공개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건수와 정보공개율 추이를 살펴보고,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간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장기간 운영성과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

### 2.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2.1.1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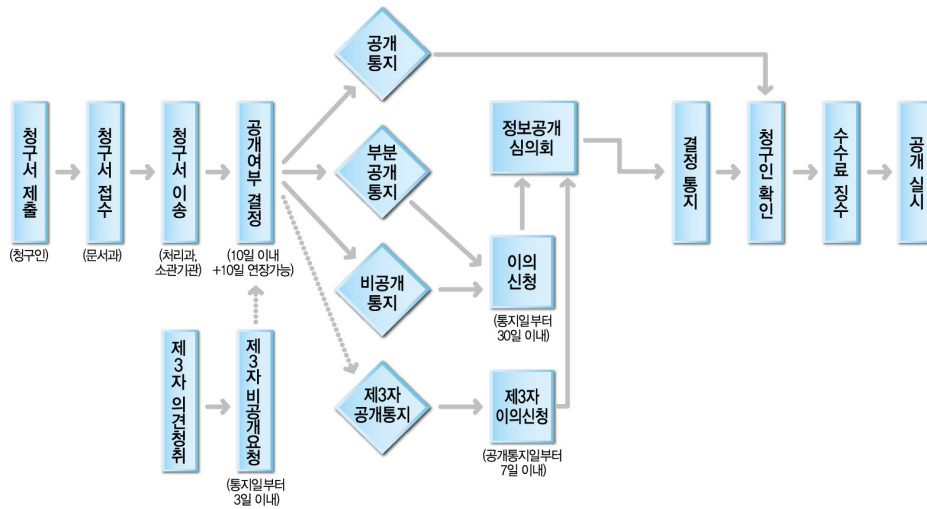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1980년대부터 학계에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오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차원의 논의가 시작되고 1992년 청주시의 정보공개조례와 1994년 3월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이 제정·시행되면서 기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94년 '정보공개법안 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1996년 12월 31일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1998년 시행하면서 법제화되었다(행정자치부, 2014). 이후 2004년, 2006년, 2008년, 2011년, 2013년에 걸친 5회의 개정(전부 또는 일부)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04년에는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 행정정보 사전공표 및 정보목록 작성·비치의 의무화, 정보공개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추상적인 비공개 기준 삭제,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민간위원을 과반수 포함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을 포함하는 전면개정을 하였다. 2006년 개정에서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 시행령 개정에서는 사전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공개 대상정보의 구체화 및 정보공개책임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3년 개정에서는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내부검토과정 종료 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

록 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기관을 명확히 하고 국가안보·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외부전문가 비율을 1/3 이상 위촉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6년 4월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개통하여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개정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의해 2014년 3월 133개 기관이 원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처리를 포함한 사전공표정보를 통합 서비스하는 '정보공개포털'로 확대 개편하였다(행정자치부, 2014).

#### 2.1.2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정보공개법에서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말하며,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국민이란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용인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된다.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인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는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과 종종, 동창회 등 법인 자격 없는 단체나 기관도 포함된다.

정보공개의 절차는 접수 또는 이송, 제3자가 있을 경우 의견 청취, 공개 여부 결정, 공개 실시 등의 단계를 거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정보공개업무의 처리 상세 절차도

출처: 행정자치부, 2014. 『정보공개연차보고서』, p. 9.

그리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단, 개인 사생활 정보,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지라도 기간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이 기준을 공개청구에 활용할 수 있다(행정자치부, 2014).

### 2.1.3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의 의의는 첫째, 알권리 실현을 위해 국민이 취할 수 있는 절차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따른 불복절차 등을 앞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라는 점이다. 셋째, 정보공개제도는 국정운

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보공개제도는 민주국가의 실천원리이자 우리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 실현의 내용이다(김승태, 2010).

### 2.2 투명성에 관한 정의

‘투명(透明)’의 사전적 의미는 물속까지 환히 비치도록 맑음이나, 사람의 말이나 태도, 펼쳐진 상황 따위가 분명하거나 앞으로의 움직임, 또는 미래의 전망 따위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것을 뜻한다.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말은 널리 쓰이지만 투명성의 정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다양하다. 송희준과 최홍석(2002)은 투명성의 제고 목적을 정보공개로 알권리 보장과 공직부패와 특수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부패 통제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정보공개 차원에서 투명성에 대한 개념

과 정의를 살펴보면, Finel & Lord(1999)는 투명성을 '국내 정치시스템 안팎의 행위자들이 이용 가능한 정부 및 사회의 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만들어 내는 법적, 정치적 및 제도적 구조'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Florini(2007)는 투명성을 '의사 결정에 대해 외부자가 정보에 입각하여 목소리를 내고 내부자가 내린 결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되는 정도'로 폭넓게 정의하였다. 그리고 박홍식(2001)은 투명성을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의 완전성'으로 나누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법률, 규칙, 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보의 완전성은 정보이용자가 문제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에 충분하며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송희준과 최홍석(2002)은 투명성이 주로 정책 내용 자체보다는 정책의 집행과 행정서비스의 전달방법과 수단을 중시하며 투명성 제고 조치를 통하여 부패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투명성과 부패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정책이 국민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될 때 부패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것처럼, 행정투명성의 향상은 부패 감소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 3. 정보공개 운영 현황과 공공기관의 투명성

#### 3.1 정보공개 운영 현황 및 추이

##### 3.1.1 정보공개 청구 현황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보공개연

차보고서』(2014)에 따르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2013년에는 552,066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어 2012년 494,707건 대비 11.6% 증가하였고, 정보공개법이 최초로 시행된 1998년의 26,338건에 대비하여 약 21배 증가하였다. <그림 2>를 보면 2006년 150,582건에서 2007년 235,230건으로 청구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의 구축으로 온라인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2>에서 2003년의 막대그래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국가기록원에서 접수한 지적(地籍)기록물의 공개 수요가 2003~2004년에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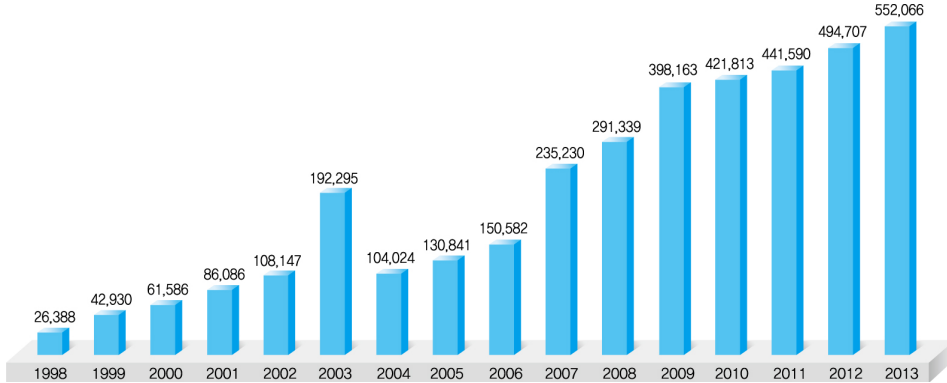
2013년 접수된 총 552,066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327,199건(59%), 중앙행정기관 131,862건(24%), 공공기관 67,161건(12%), 교육청 25,844건(5%) 순이다(<그림 3> 참조).

##### 3.1.2 정보공개 처리 현황

2013년 접수된 정보공개 신청 552,066건 중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실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는 364,806건에 대하여 처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약 87%(316,367건)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전부공개'되었고 약 9%(33,149건)는 '부분공개' 되었으며, '비공개'로 결정된 것은 4%(15,290건)이다(<그림 4> 참조).

##### 3.1.3 정보공개 처리기간의 준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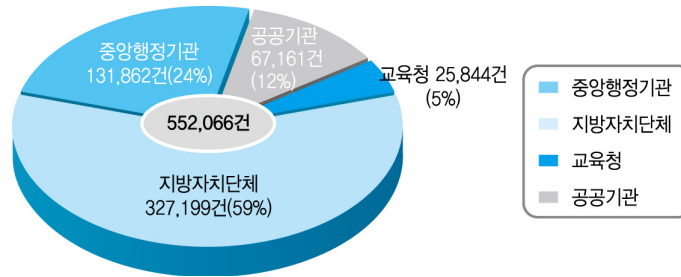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정보



<그림 2>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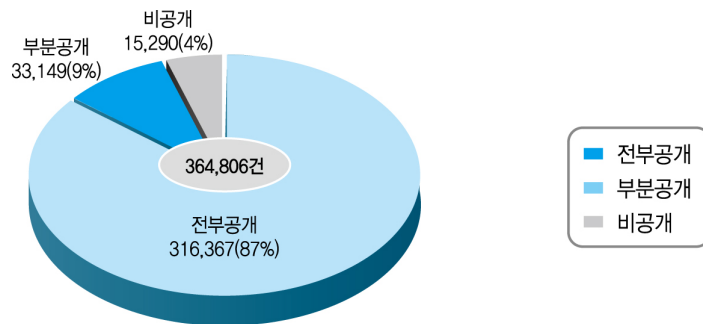
주: 2004년 이후 정보공개 통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록원이 보유하는 기록정보자료에 대한 청구 및 처리에 관한 통계가 분리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처리현황만 산출됨.

출처: 행정자치부. 2014. 『정보공개연차보고서』, p. 20.



<그림 3> 2013년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출처: 행정자치부. 2014. 『정보공개연차보고서』, p. 20.



<그림 4> 2013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출처: 행정자치부. 2014. 『정보공개연차보고서』, p. 23.

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2013년에는 청구의 99.5%가 법령상의 처리기한인 20일 이내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공개처리가 공개기한 내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10일 이내 처리비율도 96.2%로 정보공개결정은 대체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1.4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2011년까지는 정보부존재에 의한 비공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2년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로 인한 비공개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약 4%에 해당하는 15,290건의 비공개 결정이 있었는데, 비공개 결정의 주된 사유는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29%),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29%)인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15%) 등이었다. 기관유형별로 정보 비공개사유를 살펴보면 2013년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상 비밀 정보(38%),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36%),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의경영이나 영업상 비밀(31%)을 사유로 들어 비공개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기관별 업무 특성이 비공개 사유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1.5 정보공개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

부분공개를 포함하여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한 내용을 보면, 비공개건수는 2002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1998년 이후 증가율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증가하였다. 비공개 결정에 대한 2013년의 이의신청 건수는 3,320건으로 2012년에 비해 21% 증가하였으며, 행정심판 건수는 657건으로 44.4% 증가하였고, 행정소송 건수는 171건으로 80%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보공개 및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비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 이후로 부분공개를 포함한 비공개 건수 대비 불복신청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불복신청이 증가한다는 것은 정보공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2 공공기관의 청렴도

### 3.2.1 청렴도 측정 제도의 연혁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제6호(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2002년 이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여기서 '청렴도'란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공공기관의 행정 투명성을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목적은 첫째,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것, 둘째,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 부문별 청렴 수준을 도출함으로써 특정 기관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취약분야를 파악하는 것, 셋째,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표 과정 등을 통해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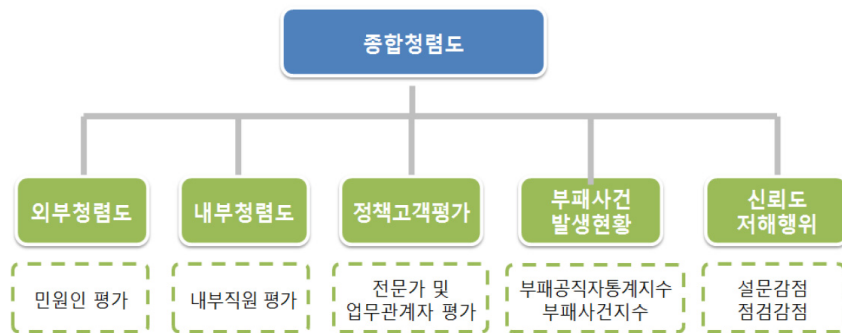
공부문이 자율적으로 청렴도 제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부패척결과 청렴도 제고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고 조성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5).

### 3.2.2 청렴도 측정 현황

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발생현황, 신

뢰도 저해행위 제재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한 지표로서 국민,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한 청렴도와 부패사건 발생정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종합지표이다(국민권익위원회, 2014)(〈그림 5〉 참조).

종합청렴도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을 위해 외부청렴도에 대한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8년 8.17에서 2012년 8.69로 측정모형 개편이 있기 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그림 6〉 참조).



〈그림 5〉 청렴도 측정의 구성 요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4. 『2013년 국민권익백서』, p. 238.



〈그림 6〉 외부청렴도 점수 추이(2002~2013)

주: 2008년 및 2012년은 측정모형 개편으로 인하여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08~2013. 『국민권익백서』, 재구성.

〈표 1〉 기관유형별 외부청렴도 수준

	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광역시	기초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2002	6.43	6.43	5.74	-	7.22	-	6.08
2003	7.71	7.82	7.5	-	7.81	-	7.44
2004	8.46	8.48	8.42	8.46	8.44	-	8.44
2005	8.68	8.75	8.46	8.68	8.67	-	8.68
2006	8.77	8.88	8.58	8.76	8.54	-	8.95
2007	8.89	8.99	8.95	8.80	8.37	-	9.18
2008	8.17	8.24	8.55	8.15	7.45	6.36	8.56
2009	8.61	8.82	8.95	8.58	7.94	8.41	8.95
2010	8.62	8.68	8.92	8.59	8.19	8.41	8.91
2011	8.69	8.60	8.75	8.54	8.02	8.57	8.99
2012	8.10	8.26	7.59	7.88	7.25	7.82	8.71
2013	8.09	8.06	7.54	7.76	7.69		8.50

주: 1. 공직유관단체란 공기업, 준정부기관, 연구원, 금융공직유관단체, 지방공사·공단 등임  
 2. 2008년 및 2012년은 측정모형 개편으로 인하여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출처: 부패방지위원회, 2002~2007, 『청렴백서』,  
 국민권익위원회, 2008~2013, 『국민권익백서』.

그리고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외부청렴도 점수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13년 외부청렴도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8.50)의 외부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광역자치단체(7.54)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공기관의 평균 정보공개율과 평균 외부청렴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평균 외부청렴도는 측정모형 개편이 있었던 2008년과 2012년의 시계열 단절을 고려하면 증가추세였다고 할 수 있다. 평균 정보공개율은 국가기록원의 지적기록물 공개청구가 많았던 2003년과 정보부존재를 비공개처리에서 제외시킨 2012년에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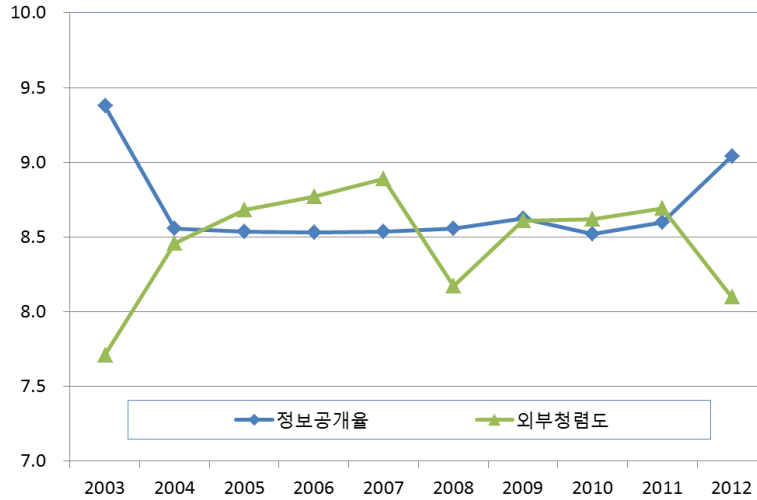
#### 4. 정보공개와 투명성의 관계

##### 4.1 통계분석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 통계자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지수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기관유형별로 정리한 후, 외부청렴도와와의 비교를 위해서 정보공개율을 10점 만점으로 계산하였다. 전체 공

##### 4.2 상관분석

정보공개와 투명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조사를 활용하였다. 중앙행



〈그림 7〉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정보공개율과 평균 외부청렴도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03~201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보도자료 재구성.  
 행정자치부, 2004~201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재구성.  
 통계청, e-나라지표, 고객만족도 지수, 재구성.

정기관의 경우 정권시기에 따라 정부조직에 변화가 있으므로 2003년~2007년의 34개 기관과 2008년~2012년의 39개 기관 중 기관의 기능과 명칭이 확연히 바뀐 기관을 제외하고 연속성이 있는 24개 기관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광역자치단체는 2003년~2012년까지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 정보공개 관련 통계자료를 2008년 이후부터 제공하기 시작해서 공기업은 2008년~2012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21개 기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부청렴도와 정보공개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정보공개율은 처리건수 대비 공개건수를 공개율로 정하였으며, 공개건수는 전체공개와 부분공개를 구분하여 0.5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부

분공개에 0.5의 가중치를 반영한 것은 각 정보공개 시안마다 부분 공개하는 비율이 다르지만, 많은 부분공개와 적은 부분공개가 고르게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적으로 0.5의 수준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text{정보공개율} = \frac{\text{전체공개건수} + \text{부분공개건수} * 0.5}{\text{처리건수}}$$

여기서 처리건수는 전체공개 건수와 부분공개 건수, 그리고 비공개 건수를 모두 더한 것으로, 2003년~2011년의 비공개 건수는 정보부준재 건수를 제외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청렴도지수의 경우는 2008년과 2012년에 측정모형의 개편으로 인한 변수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연속적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종합청렴도가 아닌 외부청렴도를 분석에 사

〈표 2〉 공공기관의 청렴도 지수와 정보공개율의 상관관계 결과

		정보공개율			
		전체	중앙	광역	공기업
외부 청렴도	2003 ~2012	0.0220 (0.6286)	0.2513*** (0.0001)	-0.0586 (0.4630)	0.0433 (0.6702)
	노무현 정부	0.1113 (0.1265)	0.2689** (0.0043)	0.0026 (0.9821)	-
	이명박 정부	-0.0190 (0.7435)	0.2469** (0.0068)	-0.2061 (0.0666)	0.0433 (0.6702)

주: ( ) 속의 숫자는 p값을 의미함. \* p<0.05, \*\* p<0.01, \*\*\* p<0.001

용하였다. 〈표 2〉는 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 지수와 정보공개율의 상관관계를 2003년~2012년의 전기간, 노무현 정부(2003년~2007년)와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로 나누어,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외부청렴도 지수와 정보공개율은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 기간은 0.2513이고, 노무현 정부는 0.2689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0.2469로 모든 기간에 걸쳐 중앙행정기관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권별로 영향이 다를 수 있었다. 공기업은 외부청렴도와 정보공개율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의 정책을 가장 먼저 수용하고 수행하는 기관인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정보공개 청구건수의 수치가 너무 적어서 통계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였을 수 있다.

## 5. 결론

1990년대 이후 투명성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있게 다루어져왔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담은 정부 3.0은 정부의 내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서 수반되어야 하는 투명성이 정보공개제도와 얼마나 연관이 있고 정권 시기별·기관 유형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1998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 552,066건으로 1998년 26,338건에 비해 약 21배로 증가하였다. 정보공개처리건수를 정보공개청구건수로 나눈 정보공개율 역시 전체 공공기관을 연도별로 보았을 때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기관 유형별·시기별로는 다른 추세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은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정책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2008년과 2012년에 걸쳐 새로운 정책 환경에 적합한 측정 모형으로 개선되었다. 2008년 측정 모형의 개편이 있기 전까지 청렴도는 증가 추세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주춤하거나 약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행 초기에는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청렴도가 계속 상승하였지만, 청렴도 수준이 일정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에서 청렴도를 더 높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과 변화된 국내의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 모형이 개편되어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청렴도 평가에서 더 낮은 점수를 형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정보공개율과 청렴도 지수를 시기별·기관유형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시기는 2003년~2007년과

2008년~2012년으로 나누고, 기관 유형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전체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만 상관계수가 전기간은 0.2513, 노무현 정부는 0.2689, 이명박 정부는 0.2469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보공개와 투명성, 두 변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변인들과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관계를 한마디로 규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효과는 단순한 알권리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민주성과 같은 근본적 가치 변화에 이르는 폭넓은 파급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후속 연구로 정보공개에 대한 질적 가치에 관한 연구, 정보공개와 투명성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 공공기관부터 업무 과정을 제대로 기록화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투명성 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혜라, 장우권 (2016).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 상관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 정보관리학회지, 33(4), 294-311.
- 국가권익위원회. 각 연도. 보도자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서울: 국가권익위원회.
- 김미경 (2008). 굿거버넌스와 정보공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1), 203-220.
- 김승태 (2009). 정보공개제도의 성과와 한계.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119-147.
- 김승태 (2010).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성과 평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3(4), 25-52.

- 김유승 (2010).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197-231.
- 박홍식 (2001). 투명성 가치: 개념적 구조와 의미.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12(3), 103-118.
- 송희준 (2002). 전자정부사업의 행정투명성 제고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0(4), 109-134.
- 송희준, 최홍석 (2002). 전자정부사업의 투명성 제고효과: 현황과 전망.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337-358.
- 안병철 (2009). 정부관료제의 정보공개행태 분석: 43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2002-200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133-160.
- 윤은하 (2012). 기록정보 서비스와 정보공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63-179.
- 이근주 (2003). 정부투명성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컨퍼런스 자료, 127-143.
- 이명진, 문명재 (2010). 공공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4(1), 121-146.
- 이보람, 이영학 (2013). 정보공개제도에서 공개 기록정보의 제도적 신뢰성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5, 41-91.
- 이재완, 정광호 (2011). 정보공개청구수용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4), 1077-1104.
- 장지원, 문신용 (2004). 행정정보공개의 관련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연구, 13(1), 170-202.
- 조영삼 (2009). 기록정보공개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방안. 기록학연구, 22, 77-114.
- 하승수 (2009). 정보공개제도와 기록관리.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자료, 639-647.
- 하승수 (2011). 한국의 정보공개운동, 역사와 과제. 앤 플로리니 엮음, 노승영 옮김, 나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권리가 있다 (pp. 449-460). 서울: 시대의 창.
- 행정안전부. 각 연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서울: 행정안전부.
- Calland, R. & Bentley, K. (2013). The Impact and Effectiveness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itiatives: Freedom of Information. Development Policy Review, 31(s1), 69-87.
- Finel, B. I. & Lord, K. M. (1999). The Surprising Logic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3(2), 315-339.
- Florini, A. M. April (2007). The Battle Over Transparency. The Right to Know: Transparency for and Open World, edited by Ann Florini, Columbia University Press, 1-16.
- Worthy, B. (2010). More Open but Not More Trusted? The Effect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on the United Kingdom Central Govern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s, 23(4), 561-58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Byeong-Cheol (2009). A Study on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Behaviors of Government Bureaucracy-A Case of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ance*, 16(3), 133-160.
-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 Commission. Annual Report. The Results of the Integrity Index for Public Organization. Seoul: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 Commission.
- Chang, Geeweon & Moon, Shin Yong (2004). An Empirical Analysis on Current Issues and Related Factors of Freedom of Information in Korean Government Agencie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13(1), 170-202.
- Ha, Soong Soo (2009). The Information Disclosure and Records Management.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Conference Proceedings*, 639-647.
- Ha, Soong Soo (2011). *Korean Information Disclosure Movement. Its History and Assignment*. Compiled by Ann Florini. Translated by Noh, Soong Young. I have an Right to know what they are doing (pp. 449-460). Seoul: Windows of history.
- Kang, Hye-ra & Chang, Woo-Kwon (201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Focusing on Local Laws and Regulation about Information Disclosur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4), 294-311.
- Kim, Mee-Kyung (2008). Good Governance and Information Disclosure: Focus on the LAIIS(Local Administratio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1), 203-220.
- Kim, Seung-Tae (2009).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23(4), 119-147.
- Kim, Seung-Tae (2010).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13(4), 25-52.
- Kim, Youseung (2010). A Study on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Government 2.0 er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5, 197-231.
- Lee, Boram & Lee, Young Hak (2013). A Study on Institutional Reliability of Open Record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5, 41-91.
- Lee, Geunjo (2003). *Government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Disclosure Activation*. The

-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Conference Proceedings, 127-143.
- Lee, Jaewan & Jung, Kwang Ho (2011). A Study on Granting Requests for Government Information: Focused on Korea Local Government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3(4), 1077-1104.
- Lee, Myoung Jin & Moon, Myung Jae (2010).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n Information Disclosure by Korean Central Agencies.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4(1), 121-146.
-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Annual Report of Information Disclosure. Seoul: The Ministry.
- Park, Heung-Sik (2001). Value of Transparency: Conceptual Structure and Meaning.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2(3), 103-118.
- Song, Hee Joon & Choi, Heung-Seok (2002). The Effects of E-government Korea on Administrative Transparency: Current Status and Prospect.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Summer Conference Proceedings*, 337-358.
- Song, Hee Joon (2002). The Effects of E-government Korea on Administrative Transparency.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0(4), 109-134.
- Youn, Eunha (2012). Archival Reference Service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163-179.
- Zoh, Youngsam (2009). The Promotion State and Measures to Improve the Recor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2, 77-114.